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

[시행 2019, 10, 23.] [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184호, 2019, 10, 23., 일부개정]

국민권익위원회(심사기획과), 044-200-7696

제1조(목적) 이 예규는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취업제한 대상자"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」제8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가 발생한 날(이하 "취업제한 사유발생일"이라 한다)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말한다.
- 2. "소속기관"이란 제1호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가 퇴직한 공공기관을 말한다.
- 3. "취업제한기관"이란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- 4. "영리사기업체등"이란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및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.
- 제3조(취업제한 대상자 확정) ① 위원회는 법 제8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90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 해당하는 자료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 취업제한 대상자의 명단을 확정하여야 한다.
 -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법 제9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 취업제한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, 그 결과를 별지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**제4조**(취업제한 안내)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 취업제한 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안내하여야 한다.
 -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빙 서류를 취업제한 사유발생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- 제5조(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) 취업제한 대상자가 영 제89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6조(취업제한 여부의 확인) ① 제5조에 따른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·확인하여야 한다.
 - 1. 취업제한 대상자가 된 원인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
 - 2. 취업하고자 하는 영리사기업체등이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 소속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확인 결과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7조(취업제한위반 확인) ① 위원회는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보고를 취합하고 영 제90조제4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료 요구를 통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.
 -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.
 -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취업제한 대상자 명단의 취업현황을 관계기관에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.
 - ④ 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이 영 제90조제3항에 따른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회신한 경우에는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.
- 제8조(취업제한 위반여부의 판단) 위원회는 법 제82조제2항의 취업제한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 - 1. 취업제한 대상자가 공직자 또는 공직자였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(이 경우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은 정관,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, 보수,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직원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)
 - 2.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한 날이 취업제한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인지 여부
 - 3. 취업제한 대상자가 된 원인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
 - 4.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한 기관이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
- 제9조(취업자의 해임요구 등) ① 위원회가 법 제83조에 따른 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 정본을 취업제한 대상 자가 취업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 -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해임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위반자에 대한 고발요구) ① 위원회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법 제89조에 따른 취업제한 위반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발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고발조치를 요구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1개월 이내에 위원회로 회신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취업제한기관에 공공근로, 아르바이트 등 한시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.
- 제11조(안건의 상정) 취업확인 점검결과 보고 및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제재요구 등을 위하여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이전 점검에서 요구한 해당 공공기관의 제재조치 결과
 - 2. 취업제한 대상자의 발생 및 취업 현황
 - 3. 취업자에 대한 제8조 각 호에 따른 검토결과
 - 4.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12조(과태료 부과) 법 제91조제2항 및 제3항제2호와 영 제9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」을 준용한다.
- 제13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 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184호, 2019. 10. 23. >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[별지 제1호서식]

비위면직자 확인 자료(공공기관명, 년도)

기관명			퇴직 전	소속부서		
인적사함	성명		직	위		
	주민등록번호		직	급		
취업제한사유	취업제한사유				파면, 해임, 원 이상 선고)	
위접제인자규	취업제한사유 발생일					
취업제한사유의 부패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의견(〇, ×)						
작성일 :	작성자 :	: (부서명) 성명)	, 연	[락처 :	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[별지 제2호서식]

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							
1. 요청인 인적사항							
소속기관 직 위	주 소						
직 급 성 명	연락처	직장 Tel. 자택 Tel.					
생년월일	취업제한사유 발생일						
2. 면직사유							
3. 취업계한 업체여부 확인							
취업예정 기관명	사업장 주소	예정 직위 및 담당업무					
「부패반지 및 구민원	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3	라하 번류 시해경 i 제89조					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B9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제한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요 청 인

(9)

(퇴직당시 소속기관·단체장) 귀 하

[별지 제3호서식]

취업제한여부 검토서					
\$}- 0	목	내 용(구체적으로 기제)			
와 관련된 제4호에 미	대상자가 된 직 중 직무 법 제2조 다른 부패행 것인지 여				
82조 제2 취업제한기 하는지 여	하이 법 제 강항에 따른 관에 해당 부 관련기관				
3. 종합 검토	결과				

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